



월간 뉴스레터

Smart decisions. Lasting value.

2022년 8월호

Contents

회계정보

- 2021 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

세무 및 법률정보

-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발표
- 최신 세무예규 · 판례

한울회계법인 업무소개

- 감사, 인증 및 관련 재무자문
- 세무신고/세무자문/세무불복
- 국제조세/이전가격
- 기업관리업무 서비스(BPO)
- 지역 및 관광개발컨설팅
- 전략/인사/리스크/관리회계/마케팅/신사업전략 등
- SOC 컨설팅
- 기업금융/구조조정/M&A/Transaction Service

[한울회계법인은 매출액기준 업계 7위 규모이며, Global Top10 회계 네트워크의 하나인 Crowe Global의 한국 Member Firm입니다.]

한울회계법인의 뉴스레터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레터 관련 연락처]

▶ 연락처

전화번호 : 02-316-6646(교환 316-6600) - 팩스번호 : 02-775-5885

이메일 주소 : secretary@crowe.kr

Website : www.crowe.kr

▶ 사무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3층~8층, 10층 (우 : 06179)

ABAS 본부
02 - 316 - 6621

2021 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

회계정보 등

■ 2021 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

[출처: 금융감독원, 2022.08.17]

< 주요 내용 >

□ (분석 결과) 상장법인의 2021회계연도 감사보고서 적정의견 비율*은 97.2%로 新외감법 시행('19회계연도) 이후 일정 수준을 유지

* '19년 97.2% → '20년 97.0% → '21년 97.2%

◦ 강조사항*이 기재된 상장법인은 572사로, 지난해와 유사하게 영업환경 불확실성, 전기 재무제표 수정내역을 다수 기재

* 영업환경 불확실성: '19년 42사 → '20년 402사 → '21년 375사
전기재무제표 수정: '19년 24사 → '20년 107사 → '21년 81사

◦ 감사의견은 적정의견이나 계속기업 영위가 불확실하다고 기재된 회사는 92사로, 자산 1천억원 미만의 소규모 기업이 다수*를 차지

* 계속기업 불확실성: '19년 84사 → '20년 105사 → '21년 92사
- 자산규모별(92사): 1천억 미만(59사), 1천억~5천억(28사), 5천억~2조(4사), 2조 이상(1사)

□ (시사점) 회계개혁* 시행에 따른 엄격한 감사환경 조성으로 비적정의견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는 일정부분 불식된 것으로 평가

* 주기적 지정제 등 지정대상 확대,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 강화(검토→감사) 등

◦ 상장법인은 재무제표 수정 등 회계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무제표 작성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운영 충실화 필요

◦ 감사보고서 이용자는 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재 기업의 경우 적정의견을 받았더라도 재무상황 및 영업환경 등이 개선되지 않으면, 향후 상장폐지되거나 비적정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의할 필요

* 계속기업 불확실성 미기재 기업보다 상장폐지 또는 비적정의견을 받은 비율이 6배 높음

개요

I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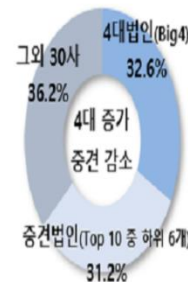
□ (분석대상) 상장법인 2,428*사의 '21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분석하였으며, '20회계연도(이하 '전기') 대비 64사 증가

* '22.3월말 주권상장법인 2,502사 중 외국법인, 페이퍼컴퍼니 등 74사 제외

◦ 분석대상 중 코스닥 상장법인이 1,508사(62.1%)로 가장 많고, 12월 결산(98.4%) 연결 재무제표(76.8%) 작성 기업이 다수를 차지

감사보고서 분석대상 개요

(단위: 사)



분석결과

II 분석결과

1 감사의견 현황

◆ **적정의견 비율은 97.2%로 新외감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된 '15회계연도(99.4%) 이후 계속 하락하였으나, 시행('19회계연도) 이후에는 큰 폭의 변동없이 일정 수준을 유지 ('19년 97.2%→'20년 97.0%→'21년 97.2%)**

□ (적정의견: 2,360사) 분석대상 상장법인의 97.2%(2,360사)가 적정의견이었으며, 전기(97.0%) 대비 소폭 상승(+0.2%p)

◦ 新외감법 시행('19년) 이후 큰 폭의 변동없이 일정 수준*을 유지

* 전기 대비 증감율(%p): '17년△0.5→'18년△0.4→'19년△0.9→'20년△0.2→ '21년 +0.2

① (비적정의견: 68사) 회계법인 33사가 상장법인 68사에 대해 비적정의견(한정 10사 + 의견거절 58사)을 표명하여 전기(71사) 대비 3사 감소

◦ 한정 의견은 10사로 전기(6사) 대비 4사 증가하였고, 의견거절은 58사로 전기(65사) 대비 7사 감소

* 감사범위제한 7사, 계속기업 불확실성 2사, 회계기준위반 1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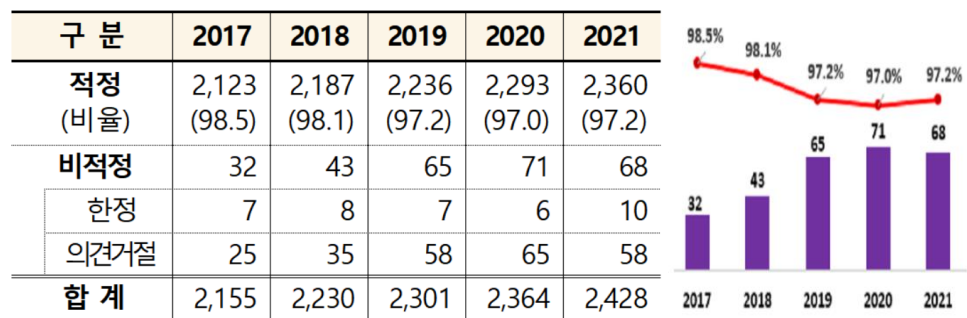
- 의견거절은 '17년부터 '20년까지 증가('17년 25사 → '20년 65사) 추세였으나, '21 회계연도에는 전기 대비 소폭 감소(△7사)

◦ 비적정의견 사유*는 감사범위제한(56사), 계속기업 불확실성(31사), 회계기준 위반(1사) 순

* 한 기업의 비적정의견 사유가 여러 가지인 경우 중복하여 계산

최근 5년간 적정의견 비율 및 비적정의견 기업 수 추이

(단위: 사, %)



□ (시장별 분포) 유가증권·코스닥 시장의 적정의견 비율은 전기 대비 소폭 상승*한 반면, 코넥스 시장은 전기 대비 크게 하락(92.1%→87.5%, △4.6%p)

* 유가증권: '20년 98.7%→'21년 99.1%(+0.4%p), 코스닥: '20년 96.5%→'21년 97.0%(+0.5%p)

시장 유형별 외부감사의견 현황

(단위: 사, %, %p)

구분	2020 회계연도					2021 회계연도					증감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합계	비율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합계	비율	합계	비율
적정 (비율)	768 (98.7)	1,397 (96.5)	128 (92.1)	2,293	97.0	785 (99.1)	1,463 (97.0)	112 (87.5)	2,360	97.2	67	0.2
비적정	10	50	11	71	3.0	7	45	16	68*	2.8	△3	△0.2
한정	2	4	-	6	0.3	2	7	1	10	0.4	4	0.1
의견거절	8	46	11	65	2.7	5	38	15	58	2.4	△7	△0.3
합계	778	1,447	139	2,364	100.0	792	1,508	128	2,428	100.0	64	-

* 2개연도 연속 비적정의견 등으로 상장폐지 결정된 회사는 모두 19사(코스닥 14사, 코넥스 5사)

(감사수입 유형별 분포) 감사인 지정기업*의 적정의견 비율(95.2%)은 자유수입 기업의 적정비율(98.7%)보다 **3.5%p 낮은 수준**

* 주기적지정 기업과 직권지정 기업으로 구분

- 주기적지정: 상장법인의 연속 6개년 감사인 자유선임 이후 3년동안 감사인을 지정
 직권지정: 관리종목, 감리조치,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공정감사 필요 회사는 감사인을 지정

◦ 지정기업은 재무상황이 좋지 않아 감사위험이 높은 기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적정의견 비율이 자유수입기업보다 낮으나, 그 차이*는 '19회계연도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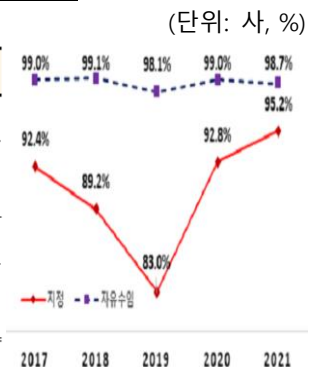
* 적정의견 비율차이[(자유-지정), %p]: '19년 15.1 → '20년 6.2 → '21년 3.5

- 직권지정 기업(적정 92.2%)에 비해 재무상황이 좋아 감사위험이 높지 않은 주기적지정 기업(적정 99.3%) 비중*이 높아진 것에 기인

* 전체 지정기업 중 주기적지정('20년에 첫 시행) 비중: '20년 28.9% → '21년 41.8%(+12.9%p)

최근 5년간 감사인 선임방법별 적정의견 비율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자유수입	회사 수	1,984	1,998	2,160	1,597	1,397
	적정의견 비율(a)	99.0	99.1	98.1	99.0	98.7
지정	회사 수	171	232	141	767	1,031
	적정의견 비율(b)	92.4	89.2	83.0	92.8	95.2
차이 (a)-(b)		6.6	9.9	15.1	6.2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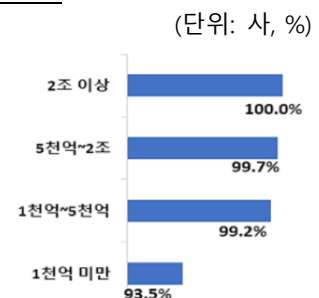


□ (자산규모별 분포) 자산규모별 적정의견 비율은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낮으며, 1천억원 미만 상장법인의 적정의견 비율이 93.5%로 가장 낮음

◦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내부통제 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아 비적정의견이 많은 것으로 추정

2021 회계연도 자산규모별 적정의견 비율

구 분	1천억원 미만		1천억 ~5천억원		5천억 ~2조원		2조원 이상		합 계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적정	855	93.5	1,020	99.2	295	99.7	190	100	2,360	97.2
한정	8	0.9	2	0.2	-	-	-	-	10	0.4
의견거절	51	5.6	6	0.6	1	0.3	-	-	58	2.4
합 계	914	100	1,028	100	296	100	190	100	2,428	100



2 강조사항 등 유의사항 기재 현황

□ (강조사항*)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이 기재된 상장법인은 572사로 전기(630사) 대비 감소(△58사)

* 감사의견에 영향은 없지만,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고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아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기재한 사항

◦ 지난해와 유사하게 코로나19에 따른 영업환경 불확실성을 다양한 업종*에서 강조사항으로 기재(341사)

* 제조업(177사), 금융 및 보험업(34사), 서비스업(33사), 도·소매업(30사) 등

◦ 전기재무제표 수정 기재는 지난해 주기적지정제, 감사인등록제 첫 시행에 따른 감사인 변경 증가로 인해 큰 폭으로 증가(+83사)하였으나, 당기에는 감사인 변경 감소* 등의 영향으로 감소(△26사)

* 감사인 변경 기업 수: '19년 611사 → '20년 1,021사(+410사) → '21년 621사(△400사)

전기재무제표 수정 기재: '19년 24사 → '20년 107사(+83사) → '21년 81사(△26사)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 문단에 기재된 주요 내용

(단위: 건, 사)

항목별 구분	2020 회계연도	2021 회계연도	증 감
소송 등 영업환경의 중대한 불확실성	402	375	△27
코로나 19 영향	369	341	△28
회계 변경	132	99	△33
전기 재무제표 수정	107	81	△26
특수관계자 등 중요한 거래	121	105	△16
합병 등 영업환경·지배구조 변화	81	78	△3
기타(신규상장, 관리종목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 등)	72	85	13
강조사항 합계	808	742	△66
기재기업 수	630	572	△58

□ (계속기업 불확실성) 적정의견 기업(2,360사) 중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기업은 92사로 전기(105사) 대비 감소*(△13사)

* '17년 84사 → '18년 85사 → '19년 84사 → '20년 105사 → '21년 92사

- 자산규모별(92사): 1천억 미만(59사), 1천억~5천억(28사), 5천억~2조(4사), 2조 이상(1사)

◦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기업(&적정의견)이 이후에 상장폐지 또는 비적정의견을 받은 비율은 13.3%*로 미기재기업(2.1%)보다 약 6배 높음

* 전기('20년) 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재 기업 105사 중 14사[상장폐지 3사, 비적정의견('21년) 11사]

3 감사인 분포

◆ 감사대상 상장법인 수 기준으로 4 대 회계법인(Big4)의 상장법인 감사비중은 '20 년까지 감소 추세였으나, 당기에는 소폭 증가로 전환

◦ 중견 회계법인의 상장법인 감사대상회사 수 비중은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올해는 감소

□ (Big4 집중도) Big4*는 상장법인 2,428사 중 792사(32.6%)를 감사하였으며, 그 비중은 전기(31.0%) 대비 소폭 증가(+1.6%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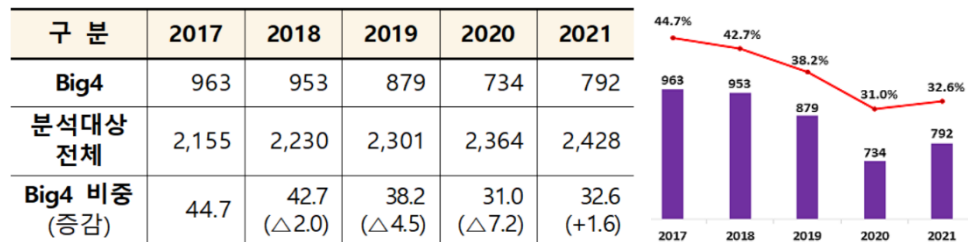
* 소속 공인회계사 수, 매출규모, 총감사회사 수 등 규모기준 상위 4개사(삼일, 삼정, 한영, 안진)

◦ 지난해까지 Big4의 상장법인 감사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당기에는 Big4로 지정된 회사 비중 증가*로 인해 소폭 증가로 전환

* 상장법인의 Big4 감사인 선임 비중: 지정 - '20년 25.8% → '21년 30.6%(+4.8%p)
자유수입 - '20년 33.6% → '21년 34.1%(+0.5%p)

최근 5년간 Big4의 감사대상 상장법인 수와 감사비중

(단위: 사, %, %p)



◦ 한편 중견 회계법인(Top 10 중 하위 6사)의 상장법인 감사비중은 31.2%로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11.3%p)하였으나, 올해는 감소(△4.8%p)

* 중견 회계법인 감사대상회사 수 비중: '19년 24.7% → '20년 36.0%(+11.3%p) → '21년 31.2%(△4.8%p)

감사대상회사 수 기준 회계법인 감사비중

(단위: 사, %, %p)

구 분	2020 회계연도					2021 회계연도					증감	
	유증권	코스닥	코넥스	합계	비율	유증권	코스닥	코넥스	합계	비율	합계	비율
Big4 (비중)	437 (56.2)	283 (19.6)	14 (10.1)	734	31.0	444 (56.1)	329 (21.8)	19 (14.8)	792	32.6	58	1.6
중견 회계법인 (비중)	185 (23.8)	610 (42.2)	57 (41.0)	852	36.0	167 (21.0)	546 (36.2)	45 (35.2)	758	31.2	△94	△4.8
기타 회계법인	156	554	68	778	33.0	181	633	64	878	36.2	100	3.2
합 계	778	1,447	139	2,364		792	1,508	128	2,4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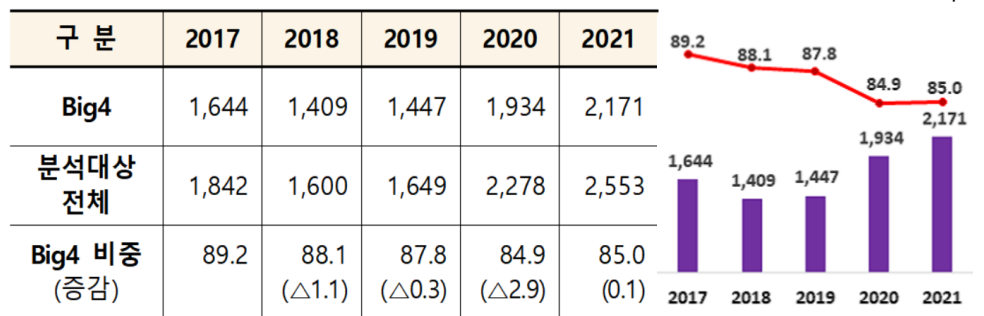
□ (시가총액 비중) 분석대상 상장법인의 '21.12말 시가총액은 2,553조원으로 전기(2,278조원) 대비 275조원(12.1%) 증가하였으며,

◦ Big4가 감사한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은 2,171조원(85.0%)으로, 그 비중은 전기(84.9%)와 비슷한 수준

- 시가총액 기준 Big4 비중은 최근 5년간 감소추세이나,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Big4의 감사품질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큼

최근 5년간 Big4가 감사한 상장법인의 시가총액 및 비중

(단위: 조원, %, %p)



□ (자산규모 비중) Big4가 감사한 자산 2조원 이상 및 5천억~2조원 미만 대형 상장법인 비중은 각각 94.2% 및 62.5%인 반면

◦ 자산 1천억~5천억원 및 1천억원 미만 중·소형 상장법인 비중은 각각 26.4% 및 17.2%에 불과

- 자산 5천억원 미만 중·소형 상장법인의 Non-Big4 선호경향은 지난해 심화(+8.0%p)되었으나, 올해는 소폭 둔화(Δ1.6%p)

* 자산 5천억원 미만 Non-Big4 비중: '19년: 71.6% → '20년: 79.6%(+8.0%p) → '21년: 78.0%(Δ1.6%p)

회계법인의 자산규모별 감사대상 상장법인 수와 감사비중

(단위: 사, %)

구 분	2020 회계연도						2021 회계연도					
	Big4		Non-Big4		합 계		Big4		Non-Big4		합 계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2조원 이상	162	94.7	9	5.3	171	100.0	179	94.2	11	5.8	190	100.0
5천억~2조원	179	66.3	91	33.7	270	100.0	185	62.5	111	37.5	296	100.0
1천억~5천억원	263	26.8	719	73.2	982	100.0	271	26.4	757	73.6	1,028	100.0
1천억원 미만	130	13.8	811	86.2	941	100.0	157	17.2	757	82.8	914	100.0
합 계	734		1,630		2,364		792		1,636		2,428	

Ⅲ

시사점

① 최근 3년동안 상장법인의 적정의견 비율은 일정수준을 유지

◦ 적정의견 비율은 **新외감법 개정** 후 계속 감소 추세였으나, 최근 3개년동안은 큰 변동없이 일정 수준을 유지*

* 적정의견 비율: '16년 99.0% → '17년 98.5% → '18년 98.1% → '19년 97.2% → '20년 97.0% → '21년 97.2%

- 회계개혁* 시행에 따른 엄격한 감사환경 조성으로 비적정의견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는 일정부분 불식된 것으로 평가

* 주기적 지정제 등 지정대상 확대,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 강화(검토→감사) 등

▷ 앞으로도 회계개혁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과도한 부담요인은 개선하는 등 회계개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 지속

* 금융위는 8월 중 학계·기업·회계업계가 모두 참여하는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을 구성하여 실무 논의를 시작할 예정

② 감사보고서의 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재사항에 유의 필요

◦ 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계속기업 영위가 불확실하다고 기재된 회사는 자산 1천억원 미만의 소규모 기업이 다수*

* 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재회사 수: '19년 84사 → '20년 105사 → '21년 92사

- 자산규모별(92사): 1천억 미만(59사), 1천억~5천억(28사), 5천억~2조(4사), 2조 이상(1사)

- 자산 규모가 작을수록 손실흡수능력이 취약하여 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재 사례가 많은 것으로 추정

▷ 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재 기업은 적정의견을 받았더라도 재무상황 및 영업환경 등이 개선되지 않으면, 향후 상장폐지되거나 비적정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의할 필요

* 계속기업 불확실성 미기재 기업보다 상장폐지 또는 비적정의견을 받은 비율이 6배 높음

③ 재무제표 수정내역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지속

◦ '21회계연도에도 다수의 상장법인이 감사보고서에 **영업환경 불확실성, 전기재무제표 수정** 등을 강조사항으로 기재'

* 강조사항 기재회사 수: '19년 250사 → '20년 630사 → '21년 572사
 - 영업환경 불확실성: '19년 42사 → '20년 402사 → '21년 375사
 전기재무제표 수정: '19년 24사 → '20년 107사 → '21년 81사

- 회사는 재무제표 수정 등 회계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무제표 작성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운영 충실화 필요

▷ 상장법인의 재무제표 수정내역에 대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감리 등을 통한 엄정 조치 예정

④ 중견 회계법인*으로의 쏠림현상은 일부 완화

* 회계법인 Top10 중 하위 6사

◦ 중견 회계법인의 상장법인 감사대상회사 수 비중은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올해는 감소*

* 중견 회계법인 감사대상회사 수 비중: '19년 24.7% → '20년 36.0%(+11.3%p) → '21년 31.2%(△4.8%p)

- 자산 5천억원 미만 상장법인의 Non-Big4 회계법인 선호 경향도 지난해 심화되었으나, 올해는 소폭 둔화*

* 자산 5천억원 미만 Non-Big4 비중: '19년: 71.6% → '20년: 79.6%(+8.0%p) → '21년: 78.0%(△1.6%p)

▷ 최근 회계법인의 품질관리능력 향상 유도를 위해 감사인 지정제도를 보완* 중이며, 향후에도 건전한 감사품질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한 감독과 알맞은 지원을 병행할 예정

* '회계법인의 역량 강화를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인 지정제도를 보완합니다'(22.7.18. 보도자료,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변경예고)

붙임 1

붙임 1 감사보고서의 개요

1 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 감사인은 감사결과를 기술(記述)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아래 기한까지 회사·증권선물위원회·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해야 함

상장법인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제출처	제출기한
회사	정기주주총회 1주 전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2주 이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사업보고서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하면,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新외감법 §23)

2 감사보고서 기재사항

가. 감사의견

□ (종류) 감사범위 제한 여부, 회계처리기준 위배 여부, 계속기업으로 존속가능성 등에 따라 적정·한정·부적정의견, 의견거절로 구분

구 분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
□ 감사범위 제한 .경미 .중요 .특히 중요	○	○ ²⁾		○ ³⁾
□ 회계처리기준의 위배 .경미 .중요 .특히 중요	○	○ ²⁾	○ ³⁾	
□ 계속기업 가정 .타당하나 중요한 불확실성 존재 - 적절하게 공시 - 부적절하게 공시 .타당하지 않음	○ ¹⁾	○ ²⁾	○ ³⁾ ○ ⁴⁾	

주:

- 1) 재무제표 주석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별도단락에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기재(감사기준서 570 문단 22)
- 2) 그 영향이 중요하나 전반적이지는 않은 경우(감사기준서 705 문단 7, 감사기준서 570 문단 23)
- 3) 그 영향이 중요하며 전반적임(감사기준서 705 문단 8~9, 감사기준서 570 문단 23)
- 4)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계속기업 가정 적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감사기준서 570 문단 21)

① (적정의견)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다고 판단할 때 표명하는 의견

② (한정의견) 감사인과 경영자 간의 의견불일치나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영향이 중요하므로 적정의견을 표명할 수는 없지만

- 부적정의견을 표명하거나 의견 표명을 거절하여야 할 정도로는 중요하지 않거나 전반적이지 않을 때 표명하는 의견

③ (부적정의견) 감사인과 경영자 간의 의견불일치로 인한 영향이 매우 중요하고 전반적인 경우 표명하는 의견

④ (의견거절) 감사범위 제한의 영향이 매우 중요하고 전반적이어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획득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판단이 불가능하여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않음

나. 강조사항

감사의견에 영향은 없지만, 이용자가 재무제표에 표시·공시된 사항을 이해하는 데 근본이 될 정도로 중요하여, 감사인이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아 감사보고서에 언급하는 사항

* (예) 회계변경, 중요 거래(특수관계자 거래 등), 중대한 불확실성(소송 등) 등

다. 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업의 존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 발생 시, 그 내용이 적절히 공시되었는지에 대해 감사인이 평가

◦ 중요한 불확실성이 없고 계속기업 가정이 유효한 경우 기업은 관련 사실을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하고, 감사인은 그 적정성을 평가

◦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계속기업 가정에 의문이 있을 때 기업은 관련 사실을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하고 감사인은 감사보고서 별도단락에 기재

라. 핵심감사사항

감사인은 감사위원회 등 기업의 내부감시기구와 협의하여 핵심감사사항을 선정하고 감사보고서에 선정 이유, 감사인이 수행한 절차 및 그 결과를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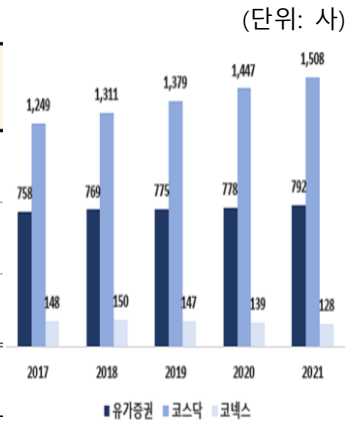
붙임 2

붙임 2 참고 통계자료

1 분석대상 상장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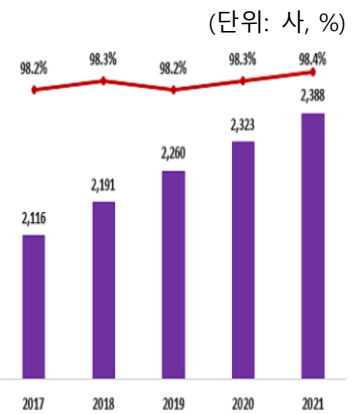
가. 시장별 분포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유가증권	758	769	775	778	792
코스닥	1,249	1,311	1,379	1,447	1,508
코넥스	148	150	147	139	128
합계	2,155	2,230	2,301	2,364	2,4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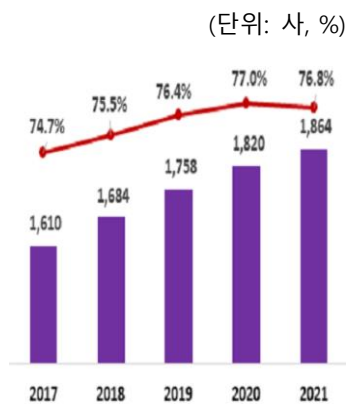
나. 결산월별 분포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12월 (비율)	2,116 (98.2)	2,191 (98.3)	2,260 (98.2)	2,323 (98.3)	2,388 (98.4)
3월	19	20	20	19	19
6월	12	11	13	14	12
기타	8	8	8	8	9
합계	2,155	2,230	2,301	2,364	2,428



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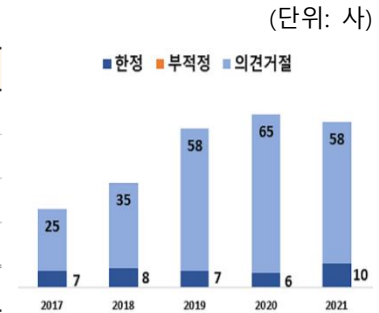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연결 (비율)	1,610 (74.7)	1,684 (75.5)	1,758 (76.4)	1,820 (77.0)	1,864 (76.8)
개별	545	546	543	544	564
합계	2,155	2,230	2,301	2,364	2,428



2 감사의견

가. 감사의견 현황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적정	2,123	2,187	2,236	2,293	2,360
한정	7	8	7	6	10
부적정	-	-	-	-	-
의견거절	25	35	58	65	58
합계	2,155	2,230	2,301	2,364	2,428



나. 시장별 감사의견 적정/비적정 현황

(단위: 사)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적정	비적정	적정	비적정	적정	비적정	적정	비적정	적정	비적정
유가증권	754	4	763	6	768	7	768	10	785	7
코스닥	1,228	21	1,280	31	1,330	49	1,397	50	1,463	45
코넥스	141	7	144	6	138	9	128	11	112	16
합계	2,123	32	2,187	43	2,236	65	2,293	71	2,360	68

다. 감사수입 유형별 감사의견 적정/비적정 현황

(단위: 사)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적정	비적정	적정	비적정	적정	비적정	적정	비적정	적정	비적정
자유수입	1,965	19	1,980	18	2,119	41	1,581	16	1,379	18
감사인지정	158	13	207	25	117	24	712	55	981	50
합계	2,123	32	2,187	43	2,236	65	2,293	71	2,360	68

라. 자산규모별 감사의견 적정/비적정 현황

(단위: 사)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적정	비적정	적정	비적정	적정	비적정	적정	비적정	적정	비적정
2조원 이상	200	-	209	1	168	-	171	-	190	-
5천억 ~ 2조원	297	2	307	-	246	-	268	2	295	1
1천억 ~ 5천억원	819	11	874	16	943	12	970	12	1,020	8
1천억원 미만	807	19	797	26	879	53	884	57	855	59
합계	2,123	32	2,187	43	2,236	65	2,293	71	2,360	68

세무자문본부
02 - 316 - 6630

세무 및 법률정보 등

세정동향, 2022년 지방세입 관계 법률 입법개정안 발표

행정안전부,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발표

행정안전부는 8월 11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전 지원을 위한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8월 12일부터 9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말쯤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의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안 제38조제3항)
 -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재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가 확인되는 경우 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까지 부과제척기간의 특례를 적용함.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의 범위 개선(안 제42조제3항)
 -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유류분을 청구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실제 상속받은 재산의 비율로 납세의무를 승계토록 규정함.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확대(안 제50조제2항)
 - 심판청구 및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포함함.
- 금융투자소득에 따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의 한시적 감면(안 제56조)
 -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초기 원천징수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2025년 및 2026년 과세기간동안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한시적으로 50% 감면함.
- 지방세 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시 체납액 총당 신설(안 제63조제2항)
 - 납세자가 환급금에 관한 권리 양도요구시 양도인 및 양수인의 체납액에 총당하고 남은 금액을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세무조사 개시 절차 신설(안 제83조제4항)

세무조사 연기가 결정된 후 연기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 연기사유가 해소된 경우나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조사를 긴급히 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근거 및 절차를 마련
-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신설(안 제84의4조)
 -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자에게 사전에 통지된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조사할 수 없도록 하며 세무조사 범위 확대시 납세자에게 그 사유와 범위를 통지토록 규정 신설

- 지방세 불복 청구대상의 확대(안 제89조)
 - 지방세 불복청구 대상을 이해관계인으로 확대하며 이해관계인을 납부통지서를 받은 제2차 납세의무자와 물적납세의무자, 보증인으로 포함하도록 규정
-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 결정 시 심판 청구기간 규정 신설(안 제91조제2항)
 -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판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함.
- 재조사 결정 관련 예외 사유 명확화(안 제96조제5항)
 - 불복청구 결정 유형 중 하나인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로서 원처분을 유지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함.

□ 지방세법

[납세자 부담 완화]

- 일시적 2주택을 취득한 자가 종전주택을 처분기간 이내에 처분하지 못한 경우 취득일이 아닌 처분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여 가산세 부담을 경감(안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
-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하위 2개 구간을 상향 조정(안 제92조제1항, 제103조의3제1항제8호·제9호)
- 개인사업자 등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내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5조제6항 신설)
-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고 세율을 조정함(안 제103조의20)
- 천재지변 등에 따른 재산손실로 납세가 곤란한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납부할 세액에서 자산 상실 비율만큼 차감하여 납부할 수 있게 함(안 제103조의31)

[과세체계정비]

- 일시적 2주택을 취득한 자가 종전주택을 처분기간 이내에 처분하지 못한 경우 취득일이 아닌 처분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여 가산세 부담을 경감(안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
- 법인의 합병·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 및 분할법인(또는 그 주주)에게 주식 등 대가가 제공되는 점을 감안하여 유상취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안 제11조제5항)
 - 종전 해석과 예규에 의하여 무상의 경우 3.5%, 유상의 경우 4%의 세율이 적용되던 것을, 합병·분할에 따른 자산의 취득과 교부하는 주식을 대가 관계로 보아 통일적으로 유상취득의 세율을 적용

- 시험분석·연구용 담배의 담배소비세 과세면제 사유를 품질개선 및 성능인증 등으로 구체화(안 제54조, 제56조)
- 간접투자회사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 개선(지방세법 제103조의19, 제103조의34)
 -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이 있고 이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한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법인세 과세표준 - 간접투자회사가 납부한 외국법인세액)로 함.

□ 지방세특례제한법

[신성장·친환경 기술 등 산업 혁신 지원을 위한 감면]

-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 감면을 확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46조, 제66조)
 - 기업부설연구소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관련해 종전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의 경우 10%p 추가 감면되던 것을, 15%p 추가 감면되는 것으로 감면 폭을 확대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산업단지 등 기업집적시설·지구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안 제58조, 제78조)

[지역 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감면]

-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이전 기업 등에 대한 감면 신설(안 제75조의3, 제75조의5)
 - 인구감소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을 신설, 사업전환 중소기업의 경우 취득세를 50%, 재산세는 5년간 50% 감면토록 하고, 창업기업 및 사업장 신설·이전 기업의 경우 취득세를 100%, 재산세는 5년간 100%(이후 3년간은 50%) 감면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임업 이용 토지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안 제8조, 제9조, 제13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 지원 강화를 위한 지원]

-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감면대상 확대(안 제22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18조, 제27조)

[제도개선 등 기타]

- 감면대상 '직접 사용'의 범위에서 '임대 제외' 명확화(안 제2조 등)

□ 지방세징수법

- 납기 전 징수사유 확대(안 제22조)
 - 납기 전 징수사유 중 “강제집행을 받을 때”를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로 함.
- 지방세 납부방법 확대(안 제23조, 제24조)
 - 지방세를 납부하는 방법을 현금, 증권, 신용카드, 자동계좌이체 외에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납부방법을 추가함.
-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요청사유 추가(안 제24조의 2)
 - 부부공유 압류재산의 공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압류재산 직접 매각시 통지규정 신설(안 제80조)
 - 지방자치단체장이 압류한 상장증권 또는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는 경우 체납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함.

최신 세무예규
판례

최신 세무예규 · 판례

- 자회사 임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주식인센티브계약에 따른 수익의 수입시기 및 소득금액 산정방법 (서면법규소득2022-2657, 2022.06.28)

(사실관계)

- 외국법인으로서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지 않은 유한회사*인 ○○○○(이하 "모회사")은 신청인인 ○○○○(이하 "신청인")가 재직중인 내국법인으로서 모회사가 주식 99.99%를 보유하고 있는 ◇◇◇◇(이하 "자회사")의 경영정상화 등을 위한 목적으로

* 우리나라 상법상 유한회사는 그 사원이 원칙적으로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형태의 회사임(상법§553)

- 자회사 임직원들에게 주식인센티브계획(이하 '쟁점계약')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약정을 체결함

(질의내용)

- 자회사 임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주식인센티브계약에 따른 수익의 수입시기 및 소득금액 산정방법

(회신)

-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내국법인인 자회사 임직원이 외국법인인 모회사와 체결한 계약(이하 "쟁점계약")에 따라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을 이루고 있는 급여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쟁점계약에 따른 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입니다.

- 특수관계인에게 주식 양도시 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액을 거래가액으로 적용 가능한지 (사전법규재산2022-251, 2022.07.20)

(사실관계)

- 질의자는 '21.12.3. 父에게 (주)○○ 10,000주를 증여하였고,
- 父에게 주식 증여 당시, 1년 전*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아 증여세 신고를 하기 위해

- 부산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인정심의 신청을 하게 되었고, '22.2.9. 주당 10,000원의 시가를 인정받은 바 있음

* '20.12.15. 질의자는 동 비상장주식 100,000주를 ◇◇투자증권을 통해 주당 10,000원에 제3자에게 양도한바 있음

- 질의자는 주당 10,000원을 시가로 인정한 평가심의위원회 평가 결정서를 근거로 '22.1.5. 동 비상장주식 306,206주를 특수관계인에게 주당 10,000원에 양도함(쟁점 거래)

(질의내용)

- 특수관계인에게 주식 양도 시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인정받은 평가액을 거래가액으로 적용가능한지

(회신)

-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본 건의 양도거래 이전의 증여거래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받은 가액은 본 건 양도거래에 대한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수출액이 소액인 지점이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부가-351, 2022. 8. 03.)

(회신)

-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이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A지점에서 재화를 수출하고, B지점이 재화를 수입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제1항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같은 법 제50조의2에 따라 해당 재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업 무 소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자문 ▪ 세무조정, 세무자문 및 Outsourcing ▪ 외국/외투기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경리, 급여, 총무,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 ▪ 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 및 청산자문 ▪ 국제조세, 이전가격 자문 ▪ 조직, 인사 전략 / HR ▪ 전략수립 및 균형성과관리/평가 /BS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지역 및 관광개발 컨설팅 ▪ 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유치 자문 ▪ M&A, IPO자문, 자산부채 실사, 주식평가 ▪ IFRS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 ▪ 재무 및 경영리스크 분석, 관리, 경영일반 자문 ▪ 경영계획 및 시뮬레이션 / BSP ▪ 정보화계획/ ISP / IT Consulting ▪ PI / CRM / Risk Management 등
문의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3층, 5~8층, 10층 (우편번호 06179) TEL: (02) 316-6646, FAX: (02) 775-5885, E-mail: secretary@crowe.kr
발행인	한울회계법인

* * * * *

한울회계법인(Hanul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nul LLC is a member of Crowe Global, a Swiss veren. Each member firm of Crowe Global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Hanul LLC and its affiliates are not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member of Crowe Global and specifically disclaim any and all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Crowe Global member.